

공고 제 호

「국민투표법」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(공람)기간
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

년 월 일

○○구.시.읍.면의 장 ○○○ 인

가. 년 월 일부터 } 일간(공휴일 불구)
 년 월 일까지

나. 열람(공람)시간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

[illegible]

주 : 1. 명부공람장소 공고시에는 투표구명란에 통·리의 명칭도 기재함
2. 공람장소 공고는 통·리별로 함